50. 장애인복지시설(운영중단,운영재개,폐지) 신고

□ 민원개요

○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가 시설 운영을 일시 중단·재개하거나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 3개월 전까지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.

□ 민원 처리현황

담당부서	주민복지과	처리기간	10일	수수료
근거법령	장애인복지법			없음

□ 구비서류

○ 민원인 제출서류

- 시설의 운영 중단·재개·폐지사유서(법인인 경우에는 중단·재개·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) 1부
- 시설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(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)
- 시설 이용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 조치계획서 1부 (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)
- 보조금·후원금의 사용 결과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 조치계획서 1부(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)
- 시설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(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)
- 운영중단 사유의 해소조치 결과보고서 1부(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)
- 향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계획서 1부(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)
-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(시설폐지의 경우만 해당)

□ 심사기준(요건)

○ 시설 휴지·재개·폐지에 따른 조치 계획의 타당성·적합성·이행여부 등

□ 민원처리 흐름도

신고서 제출	→	접수	→	검토 및 확인 (필요시현장확인)	→	결과통보
(민원인)		(주민복지과)		(주민복지과)		(주민복지과)

□ 문의처

부서명	전화번호	비고
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	930-3282	